교원 인사 규정

개정 2019.04.17. 개정 2019.07.24. 개정 2019.11.27. 개정 2021.08.26.
개정 2022.02.23. 개정 2022.04.04. 개정 2022.04.12. 개정 2022.09.0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정관에 준거하여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문개정 2019.11.27.>

①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적용한다.<개정 2022.04.12.>.

② 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에 관한 임용사항은 해당 임용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교원)

본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교 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④ <삭제 2012.07.16>
⑤ <삭제 2011.09.08.>
⑥ 강사<신설 2019.07.24.>

제4조 (겸직규제)

① 교원은 이 규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에 전속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기타 상근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타 기관에 전속하지 않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5조 (교원의 자격)

① 사립학교법 제52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1.08.01.>
② 겸임교수, 초빙교수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4.09.15.>
③ 산학협력중점 교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2.09.05.>

④ 강의전담 교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2.04.12.>
⑤ 강사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2.04.12.>

제6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1.08.01.>

제7조 (결격사유 조회 및 신고)
① 신규 임용전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필하여야 하며 재임 중 모든 교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팀에 즉시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04.17., 2021.08.26., 2022.04.04>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9.11.27.>
2.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이상의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5.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07.16>

제8조 (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 전보,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9조 (전력조회)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코자 할 때에는 전력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용기간 등) <전문개정 2014.09.15. 2019.11.27.>
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직위별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재계약)한다.
1. 교수 : 6년(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정년까지 기간
2. 부교수 : 6년 또는 정년까지 기간
3. 조교수 : 3년
② 교원의 신규 임용시에는 1차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③ 급여 : 본교 교원 연봉제 지급규정에 의한다. 단, 강사는 강사임용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④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⑤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⑥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⑨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정년자의 임용기간은 정년 하는 학기의 말까지 임용한다.
⑪ 임용기간의 계산 :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말, 8월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고 다음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에 기간제 임용한다.

제11조 (정원책정)
교원의 계열(학과)별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08.01.>

제2장 신분보장

제12조 (신분조치제한)
교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기타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계열(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의 정년퇴직기일은 정년해당일의 학기말로 한다.

제14조 (휴직 및 면직)
교원의 휴직 또는 면직의 사유 및 기간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신규임용

제15조 (임용자격) <전문개정 2019.11.27.>
본교 설립정신과 제반 교육방침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자.
2.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실기·실습 및 산학협동 등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우수한 경우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가능.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6조 (임용절차)

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본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2012.07.16>

② 신규 임용 대상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규임용직급)

① 신규 임용자의 직급은 학위,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 <삭제>

제18조 (연구실적물)

① 신규 교수로 임용되기 위 하여는 200% 이상의 연구 실적물이 있어야 한다. 단, 100% 이내의 연구 실적이 부족한 때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겠다는 연기 서약서를 제출한 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서약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치 않을 시에는 임용을 취소한다.<개정 2011.09.08. 2022.09.06.>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09.06.>

제19조 (임용조건) 임용조건은 본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교원은 연간 1편(100%)이상의 연구실적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3.19., 2016.03.31.>

① <삭제 2014.03.19.>

② <삭제 2014.03.19.>

③ <삭제 2014.03.19.>

제20조 (임용취소)

교원은 임용했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신원조회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② 관할청으로부터 임용보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때

제21조 (신규임용교수의 제출서류)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의 서류를 각각 1통씩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4.>

1	이력서	
2	교원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본교 소정양식
3	학위증명서	학위별
4	성적증명서	학위별
5	경력증명서	
6	자격증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8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등본	
10	채용신체검사서(사진첨부)	(종합병원장 발행)
11	신원진술서	
12	기본증명서	
13	신임교원 임용계약서	소정양식
14	부양가족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15	복무서약서	소정양식
16	반명함판사진(3×4cm)	(신분증 발급용)
17	전출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제4장 재임용

제22조 (절차) <전문개정 2014.09.15.><조문개정 2019.11.27.>

① 제10조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ㆍ재계약 대상자심사위원회가 평정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단, 강사는 강사임용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7.24.>

② 재임용·재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7., 2020.07.16>

직 위	연구실적물	연수실적	심사평정[별표1]
신임교원	연간 100%이상	2주 이상	항목별 1/2 이상, 총점 60점이상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300% 이상		
교수	300% 이상		

1. 연구실적물 및 연수실적은 임용기간에서의 누적계산으로 하며 강의평가는 임용기간에서의 평균 점수로 한다.<개정 2019.11.27., 2020.07.16>
2. (1항) 연구실적물은 재임용ㆍ재계약 대상자 심사위원회 개최일이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한다.
3. (2항) 심사평정은 [별표1 재임용 및 재계약대상 심사평정표]에 의한다.

③ 신임교원은 ②항에 의한 재임용 및 재계약대상자 심사평정표 평가와 신규임용교원

재임용 규정을 적용한다.<조항신설 2016.08.23.>

④ 재임용·재계약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항신설 2016.08.23.>

1. 임용권자는 당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재임용·재계약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재계약을 위한 정해진 평가절차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4. 제3호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임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임용권자는 당해 전임교원을 재임용·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6. 제5호의 통지사항에는 재임용·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 <전문삭제 2014.09.15.>

제5장 승진임용

제24조 <전문삭제 2014.12.16.>

제25조 <전문삭제 2014.12.16.>

제26조 <전문삭제 2014.12.16.>

제27조 (승진)

재직 중인 교원 중 승진 소요 년 수에 도달한 교원의 연구실적물 등을 심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진 임용한다.<전문개정 2012.07.16>

제28조 (승진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4.09.15., 2016.03.31., 2019.11.27. 2022.09.06.>

직 위	연구실적	연수실적	강의평가	업적평가
조교수 → 부교수	600%	2주이상	80점	75점
부교수 → 교수(6년계약)	500%	3주이상	80점	75점
부교수 → 교수(정년보장)	500%	3주이상	80점	85점
교수(6년계약)→ 교수(정년보장)	500%	3주이상	80점	85점

1. 연구실적은 누적 계산한다.<개정 2019.11.27., 2020.07.16>
   가. 조교수에서 부교수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합산
   나. 부교수에서 교수(6년계약, 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합산
   다. 교수(6년계약)에서 교수(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합산
   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6조(평가대상 제외) 제④항에 해당하는 보직자의 연구실적물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연구실적물 합산 기간내 보직을 맡을 경우 보직기간 1년 단위씩 50%를 인정한다. (보직기간은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계산)
2. 강의평가는 평균점수로 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개정 2019.11.27., 2020.07.16>
   가. 조교수에서 부교수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평균점수
   나. 부교수에서 교수(6년계약, 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평균점수
   다. 교수(6년계약)에서 교수(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평균점수
3. 업적평가는 평가를 면제받은 년도를 제외한 최근 3개년의 평균점수로 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개정 2020.07.16.>
4. 연수실적은 누적 계산 한다.<신설 2020.07.16.>
   가. 조교수에서 부교수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연수실적 합산
   나. 부교수에서 교수(6년계약, 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연수실적 합산
   다. 교수(6년계약)에서 교수(정년보장)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일로부터 최근 6년 이내의 연수실적 합산
5.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 제2조(임용대상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심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신설 2020.07.16.>

제29조 (승진 제한)

①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은 승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직: 3년
2. 감봉: 2년
3. 견책: 1년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② 휴직사유가 있는 교원의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승진임용시기)

교원 승진임용은 매학기초(3월 1일자,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교원직급별 승진 소요 년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 교 수 → 교 수 : 6년

② 조 교 수 → 부교수 : 7년<개정 2012.07.16>

③ <삭제 2012.07.16>

단서조항 삭제 <개정 2014.09.15.>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부교수 중 학교발전을 위해 현격한 공을 세운 교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신설 2020.07.16.>

제32조 <전문삭제 2014.09.15.>

제6장 정년보장

<신설 2019.11.27.>

제33조 (정년보장 절차 및 심사대상) <전문신설 2019.11.27.>

정년보장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정년보장 교원의 업적평가) <전문신설 2019.11.27.>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년보장 임용된 교원의 업적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정년보장 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원 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은 본 규정 제28조(승진임용 심사기준) 및 '업적평가규정'의 재임용기준에 따른다.

③ 정년보장 임용일을 기준으로 매년 업적평가를 심사하고 평가점수 60점 미달일 경우에는 교원 연봉제 급여 규정의 [별표3] 성과급 지급기준금액표 연구보조비 50%를 삭감 지급한다.

제7장 연구 및 연수

제35조 (연구실적 심사기준) <조옮김 제33조 → 제35조, 2019.11.27.>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

1.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자격 인정을 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 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나. 학회지
   다. 논문집
   라. 학술적인 정기간행물
   마.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 전시, 입선 등을 말한다.
   바. 국제 특허<신설 2022.02.23.>
   사. 국내 특허<신설 2022.02.23.>
   아.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신설 2022.02.23.>
   자. 캡스톤디자인 지도<신설 2022.02.23.>
   카. 학생창업 지도<개정 2022.02.23.>
   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도<신설 2022.02.23.>
   파. 산학협력 공동연구, 기술·경영 자문<신설 2022.02.23.>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

교원인사(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 등) 및 업적평가를 위한 연구실적물은 반드시 본교 연구진실성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03.19., 2019.11.27., 2022.04.12.>

1. 강의용 저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자의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저서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편찬한 1종 교과서는 제외한다.
2. 예, 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써 대체할 수 있다.
3. 박사학위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개정2014.03.19.><개정 2022.02.23.>
4.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5. 다음의 논문은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연구실적으로 인정(신규임용시는 제외)하되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가. 전문대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나.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다.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라. 학생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마. 산업체에서 계속 2개월 이상 현장연수 후 작성한 연구결과 보고서
6. 온라인강좌 컨텐츠는 1학점은 30%, 2학점 60%, 3학점은 80%를 인정한다.<신설 2022.02.23.>
7. 산학협력연구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02.23.>

가. 국제특허, 국내특허, 실용신안/디자인

(ㄱ) 출원하여 등록된 것만 인정하며 발명인과 출원인은 같아야 함

(ㄴ)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특허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지서 첨부

나. 캡스톤디자인 지도

(ㄱ) 정규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함.

(ㄴ)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다. 학생창업 지도

(ㄱ) 학생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도

(ㄱ)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에 따라 참여 학생을 지도한 경우

(ㄴ) 회사 수 × 20%로 산정(상한 80%/년)

(ㄷ) 현장실습지원팀 확인 자료 제출

마. 산학협력 공동연구, 기술·경영 자문

(ㄱ) 산학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함.

(ㄴ) 건수 × 20%로 산정(상한 80%/년)

③ 연구실적심사

1.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3인의 상위직 교원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타교 교원으로 위촉한다.
2. 연구실적물 중 논문집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09.08.>
3.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참여 인원에 따른 인정율

(ㄱ) 1인 연구(편찬) : 100% 인정

(ㄴ) 2인 공동연구(편찬) : 70% 인정

(ㄷ) 3인 공동연구(편찬) : 50% 인정

(ㄹ) 4~5인 공동연구(편찬) : 30% 인정<개정 2021.08.26.>

(ㅁ) 6인 이상 공동연구(편찬): 100/n% 인정(국제학술지 SCI, SSCI, A&HCI, SCIE, SSCIE, A&HCIE, SCOPUS, FOCUS는 제외)<신설 2021.08.26.>

나. 연구실적물 유형에 따른 인정율<전문개정 2021.08.26.><개정 2022.02.23.>

분 야	내 용	인정율(%)	비고
학술논문	석사학위논문	100	
	박사학위논문	200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SCIE, A&HCIE, SCOPUS, FOCUS)	150	
	기타 국제학술지	100	
	국내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100	
	기타학술지	70	
학술발표	학술발표회 주제발표	40	
	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	30	
저서 및	전공관련 도서	100	

단행본	온라인강좌 컨텐츠개발		80	
	전공관련 문제집		50	
	단행본 학술자료집(논평, 서평)		20	
	전공관련 도서 개정판		20	
	전공관련 문제집 개정판		20	
산학협력 연구	국제특허		200	
	국내특허		100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50	
	캡스톤디자인 지도		30	
	학생창업 지도		30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도		20	
	산학협력 공동연구, 기술·경영 자문		20	
연구 보고서	국고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30	
체육 분야	공공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		100	
	국제경기의 감독, 코치 및 심판출전		100	
	전국체전 및 국내선수권대회의 감독, 코치 및 심판출전		50	
	시, 도 선수권대회의 감독, 코치 및 심판출전		30	
예능 및 기타 분야	도(직할시 포함)단위 이상의 단체전, 협회전(사단법인등) 등에 출품		50	
	전시	개인전	100	
		전시행사	70	
	국제행사의 초대작가 위촉 출품 (5개국 이상 참여)		120	
	국내행사의 초대작가 위촉 출품		100	
	공연	주도적 역할(도단위 이상)	100	
	기획 연출	주도적 역할(도단위 이상)	100	
	행사(이벤트등)의 주도적 기획, 연출		100	
	개발 창작	전공관련 국제적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입상시 2배 적용)	50	
		도단위 지자체 이상의 공모전, 경연대회 및 초대전 등에 본대학 소속으로 출품, 출연한 창작물(입상시 2배 적용)	30	

4. 연구실적 평점은 각 편 공히 “우”이상이어야 한다.(다만, 평점은 수, 우, 미, 양, 가 등 5단계 평가방법으로 한다)
5. <삭제 2021.08.26.>

제36조 (교원의 연수) <조옮김 제34조 → 제36조, 2019.11.27.>

교원의 연수는 다음 유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4.09.15>

① 전공에 관련된 중소기업 이상의 산업체

② 교육부, 관련학회 및 협회주관(후원)의 연수<개정 2014.03.19.>

③ 전국전문대학 계열(학과)별, 계열별 공동연수(교내 자체연수 제외)

④ 전공과 관련된 해외연수

⑤ 전공에 관련된 교원들의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연수

⑥ 기타 연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37조 (표창) <조옮김 제35조 → 제37조, 2019.11.27.>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①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②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헌을 하였을 때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제38조 (징계) <조옮김 제36조 → 제38조, 2019.11.2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관 리

제39조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비치) <조옮김 제37조 → 제39조, 2019.11.27.>

본교 담당부서는 매 학기초 1개월 전에 승진후보자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교원직급별 서열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1.08.01.>

제40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요청) <조옮김 제38조 → 제40조, 2019.11.27.><삭제 2019.11.27.>

부 칙

제1조 (통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교원인사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② 본 규정 개정 전 연구실적의 연간 인정범위는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현 직명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은 현 직명에서만 인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교원인사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08.)
제1조 (시행일)
제3조, 10조는 201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제18조는 2012년 03월 0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제33조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교원은 조교수로 보며 동일한 호봉을 부여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의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보며 현재의 직급과 호봉을 그대로 부여한다.
③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 년 수 산정 시 전임강사 경력 중 승진 누락 경력은 제외한다.
④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 년 수 산정 시 2년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⑤ 개정된 재임용·재계약 심사평정표는 재임용·재계약 기간이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개정된 제28조 (승진임용심사기준) 적용은 2017.03.01.일부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된 제22조(재임용) 재임용 및 재계약 대상자 심사평정표는 2019.03.01.일부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개정된 제22조(재임용) 제③항은 2016.09.01일부 이후 임용된 신임 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행하여진 교원인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0.0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는 2022년 09년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연구실적물에 유형에 따른 인정률은 해당연도 인정률을 따른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2012.07.16.><개정 2016.03.31.>

재임용 및 재계약 대상자 심사 평정표

심사위원 직위 성명 (인)

○ 항목별 평점기준(100점 만점)

인적사항	소속 학과		직명	
	성명		보직	

구분 / 번호	항목	내용	기준			점수	자료
1	교원업적평가(45)	•최근3년간의 평균점수 (소수점이하 절사) •신규임용자는 임용기간의 평균점수	• 박사학위(명장)			10	•학위증 •자격증 •교원업적평가
			• 석사학위(기술사, 기능장)			5	
			• 업적평가점수 90 ~ 100			35	
			80 ~ 89			30	
			70 ~ 79			25	
			60 ~ 69			20	
			0 ~ 59			0	
2	학생지도능력(35)	• 수업결손으로 학사일정에 지장 초래 및 면학분위기 훼손	수업결손	A	4주이상	−20	•학생지도 상담일지 •관련입증자료
				B	2주이상 3주미만	−15	
				C	1주이상 2주미만	−10	
				D	1주미만	−5	
		•강의평가 평균점수	점수	•60점 미만		−15	
				•65점 미만		−10	
				•70점 미만		−5	
3	법령 준수 및 품위유지 (20)	•교육 및 기타 법령준수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15	•관련자료
			•정직			−10	
			•감봉			−7	
			•견책			−5	
			•경고			−1	
		•학내활동	•학내 행사 무단 불참(회당)			−1	
			•학내 회의 무단 불참(회당)			−1	
			•학내 지정교육 무단 불참(회당)			−1	
		•품위 유지	•성희롱 물의			−5	
			•음해성 투서 행위(학내,학외)회당			−2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미만은 재임용 제청이 제외 됨

*총 평점이 60점 이상이라도 평점 항목 1.2.3 중 과락(평정항목별 점수가 1/2이하 인 경우)인 경우 재임용 제청이 제외 됨.